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JPD, JPD-RA, JPD-RB, JPD-RC
 책임 부서: Office of the School System Medical Officer;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Well-being

학생에 대한 의약품 투여 Administration of Medication to Students

I. 목적

이 규정은 필요한 경우, 학교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의약품을 투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II. 배경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School Health Services (SHS)은 적절한 의약품 보관 및 투여를 위한 규정과 절차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이 규정의 적용은 MCPS, SHS, 학부모/후견인/보호자, 학생 및 공인 처방사와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III. 정의

- A. *공인 처방자(Authorized Prescribers)*는 Maryland 법에 따라 개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을 처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에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공인 및 등록된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가진 족부 전문, 면허를 가진 의사 보조(physician assistants) 및 면허를 가진 치과 의사가 포함됩니다.
- B. *통제물질(Controlled Substances)* 각성제(stimulants)(주의력결핍/과활동장애(ADHD)에 대한 각성제 포함) 및 우울증제(depressants), 마약류(narcotics) 및 일부 진정제를 포함합니다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응급 발작 약물은 통제 물질로 분류되지만 IV.E. 섹션에 명시된 것처럼 발작 시 학생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른 통제 물질과 동일한 저장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C. *허브 약품 또는 한약재(Herbal Medicines)*는 다양한 식물과 약초로부터 파생한 추출물입니다.
- D. *동종요법 약품(Homeopathic Medicines)*은 미국 식품의약국(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이 공인한 공식 제조 매뉴얼인 미국 동종요법 약국(*Homeopathic Pharmacopoeia of the United States*)에 기재된 공정에 따라 동종요법 약국에서 만든 약품입니다.

*일반 약품(Over-the-Counter-OTC medications)*은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품입니다.

*처방전(Prescription Medications)*은 공인 처방자가 처방한 약 약품입니다.

IV. 행정절차

- A. SHS 혹은 MCPS 직원의 학생에 대한 약품 투여
1. MCPS 와 SHS 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생활시간 중에 학생에게 약품을 투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2. 가능할 경우, SHS 교직원이 DHHS 의 *School Health Services Manual* 에 기재되어 있는 정책에 따라, 학교 시간 내에 약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3. 학교장/대리인은 SHS 직원이 없을 경우, DHHS 의 *School Health Services Manual* 에 있는 정책에 따라 약품을 제공할 MCPS 교직원을 지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학교장/대리인은 학교 커뮤니티 보건 간호사(school community health nurse-SCHN)와 함께 일하여 지정한 교직원이 SHS 직원이 없을 경우 학생에게의 약품 투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적시에 SHS 에게 받도록 합니다.
 5. MCPS 교직원이 학생에게 정기적으로 약품을 투여해야할 경우, 교직원은 주법률에 따라 약품 테크니션(medication technician)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Montgomery 카운티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는 해당 직원이 인증된 약품 기술자가 되고 인증서를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합니다.

6. MCPS 에서는 훈련을 받은 의료진 또는 인증된 의약품 기술자만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예: 온도계)의 침습적 투여를 포함하는 민감한 외과/침습적 의료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B. 학생이 직접 투여할 경우

책임있게 발달상으로 가능한 학생은 특정 약(예를 들어 흡입기, 자동주입형 에피네프린, 인슐린)을 의료 담당자나 SCHN 이 승인한 경우, 직접 투여할 수 있습니다.

1. MCPS Form 525-13, *처방약 투약 허가서(Authorization to Administer Prescribed Medication)*는 공인 처방자가 작성 및 서명을 해야하며 학생이 의약품을 소지 또는 투약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Regulation JPD-RB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동주입형 에피네프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MCPS Form 525-14, *Emergency Care for the Management of a Student with a Diagnosis of Anaphylaxis* 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양호교사 또는 학교 간호사는 학생이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는지 평가 및 승인해야 합니다.
3. 학생은 절대로 MCPS 소유지에서 규제 약물을 휴대하거나 스스로 투여해서는 안됩니다.
4. 학생들은 다음에 따라, MCPS 소유지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절대로 피우거나 소유 또는 자가휴대할 수 없습니다-
 - a) Maryland 주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생이 어떤 형태로든 의료용 대마초를 자가 투여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 b) Maryland 주 법에 따라, 학교 소유지 내에서 흡연 또는 베이핑 포함하여 의료용 대마초를 투여하는 모든 방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자동 주입형 에피네프린 사용절차는 MCPS Regulation JPD-RB, *Emergency Care for Students Experiencing Anaphylaxis* 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6. MCPS 규정 JPD-RC,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증상을 경험하는 학생을 위한 응급관리(Emergency Care for Students Experiencing Symptoms of Opioid Overdose)*에 명시된 바와 같이, MCPS 소유지와 학교후원 활동 중에 날록손을 소지한 학생은 날록손을 소지한 것만으로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C. 약품의 포장 및 라벨링

처방약은 약국 라벨이 부착된 용기에 담겨 제공되어야 합니다. 오리지널 처방 용기는 약사가 Maryland 법에 따라 라벨을 적절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약국 라벨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의약품 명
2.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3. 처방 날짜 또는 처방전이 작성된 날짜 및 만료 날짜
4. 공인 처방자 이름
5. 환자 이름
6. 사용 지침(예: 투여 빈도, 투여 약물 용량 및 투여 경로)

D.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과 동종요법 의약품, 허브 의약품/한약은 학부모/후견인/보호자의 서면 허가, 공인된 처방자의 처방을 포함한 처방약의 절차에 따라 제공됩니다.

1. OTC 약은 라벨과 안전 봉인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인 제조업체의 원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2. 동종요법이나 허브/한약이 OTC 제품일 경우, 라벨과 안전 봉인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인 제조업체의 원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E. 의약품 보관

1. 개별 학생이 휴대하고 자가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은 SCHN의 권한에 따라 아래에 명시된 대로 잠긴 캐비닛에 보관해야 하며 약물을 투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의약품은 효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으로 학교에 보관해야 하며, 의약품 투여를 위해 지정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3. 의약품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는 항상 잠겨져 있어야 하며 의약품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4. 통제 의약품은 위에서도 같이 면제되지 않는 한, 이중 잠금된 곳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예: 열쇠로 잠그는 캐비닛의 잠금 박스 내, 책상 서랍 또는 파일 캐비닛) 통제 약품의 재고는 매달 그리고 통제 약품이 학교에 반입될 때마다 완료해야 합니다.
 - a) 응급 및 기타 발작약물은 언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 포함된 서명된 공인 처방자의 주문서와 함께 잠긴 상자 또는 캐비닛에 보관해야 합니다.
 - b) 학생이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의약품(예: 현장 학습 중)은 학생이 아닌 책임감 있고 훈련된 직원이 보관해야 합니다.
5. 모든 의약품은 만료일 1 주일 후 또는 약품이 중단되거나 학년이 끝날 때, 적절한 통지에 따라 학부모/후견인 또는 학부모/후견인이 지정한 다른 성인에 의해 학교에서 수거해야 합니다.
6. 학부모/후견인 또는 학부모/후견인이 서면으로 지정한 성인만이 학교에서 통제약품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7. DHHS 절차에 따라 학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지정된 성인이 회수되지 않은 의약품은 폐기합니다.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7-401, §7-421, §7-426, §7-426.1, §7-426.2, and §7-446, and Health-General Article, §21-221(a);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0.13.12.01.B(1), 10.27.11.01-.02, 10.27.09.03I, and 13A.05.05.08F; Guidelines for Emergency Care in Maryland Schools, 2nd Maryland Edition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Delegation of Nursing Functions to Unlicensed Direct Care Providers in a School Setting: Maryland State School Health Services Guideline,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Maryland Department of Health (January 2006);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Maryland Medical Cannabis Commission, Guidelines for Public Schools Allowing the Administration of Medical Cannabis to Students

규정변경사:

규정 번호 525-13; 1982년 10월 갱신; 1992년 6월 8일 폐지; 2005년 12월 6일 재 재정, 2016년 4월 20일 갱신, 2023년 4월 27일 갱신.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조상,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역할, 성 표현, 성 취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우리 모두를 위한 형평성, 포용성, 수용을 창출, 육성 및 촉진하려는 우리 커뮤니티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증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상당한 방해로 일으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언어의 사용과/또한 이미지와 표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내재적 편견,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MCPS 학생*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용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용
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Well-being Office of Well-being, Learning and Achievement 850 Hungerford Drive, Room 257, Rockville, MD 20850 240-740-5630 504@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또는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니다.